

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안이유

- 주민공개를 제안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동 조례 제6조제3호 “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이나 경기도 또는 파주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거나 사업추진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”을
- 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된 사항” 및 “시정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파주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”으로 각각 수정함.
(안 제6조제3호, 제4호)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- 동 조례개정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 재정운영상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해 '97년 7월 30일 제정되었고, 기 2차례 개정된 바 있는 “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”를 부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

- 개정내용도 “경기도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”중 개정된 조항 (2001.11.9)의 내용을 따르고 있어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.

<지방재정법>

[일부개정 2001.129 법률 제6400호 행정자치부]

第118條의3(財政運營狀況의 公開등)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會計年度마다 1회이상 歲入·歲出豫算의 집행상황, 地方債 및 一時借入金의 現在額, 公有財産의 증감 및 현황, 重要物品의 증감 및 現在額 기타 財政運營에 관한 重要사항을 住民에게 公開하여야 한다. [本條新設 1994.12.22]

<경기도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>

제6조 (주민공개의 제한) 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.

1.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·정책에 관한 사항
2. 시설공사·물품의 제조 및 구매등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
3.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된 사항 <개정 2001·11·9>
4. 도의 정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 [신설 2001·11·9]

나. 내용타당성

- 개정내용은 제6조(주민공개의 제한)중 제3호 “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경기도 또는 파주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거나 사업추진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”을 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된 사항”으로 개정하고, 4호에 “시정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파주시조례규칙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”을 신설하는 것으로

- 당초 임의적 판단으로 공개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『공공기관
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』에 의한 비공개 대상과 다른 법령에 의거 비
공개로 규정된 사항 그리고 파주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비공
개로 결정한 사항 등 비공개 대상범위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정하여
시민에 대한 시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내용면에
있어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됨.

<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>

[제정 1996.12.31 법률 제5242호 총무처2]

第7條 (非公開對象情報) ①公共機關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情報에 대
하여는 이를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다른 法律 또는 法律에 의한 命令에 의하여 秘密로 유지되거나 非公開
事項으로 規定된 情報
2. 公開될 경우 國家安全保障・國防・統一・外交關係등 國家의 중대한 이
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情報
3. 公開될 경우 國民의 生命・身體 및 財産의 보호 기타 公共의 安全과 이
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情報
4. 進행중인 裁判에 관련된 情報과 犯罪의 豫防, 搜查, 公訴의 제기 및 유
지, 刑의 執行, 矯正, 保安處分에 관한 사항으로서 公開될 경우 그 職務수
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刑事被告人의 公정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침
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情報
5. 監査・監督・檢査・試驗・規制・入札契約・技術開發・人事管理・意思決
定過程 또는 內部檢討過程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公開될 경우 業務의 公正
한 수행이나 研究・開發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
이유가 있는 情報